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1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이주희 · 노종면 · 서미화
백승아 · 장종태 · 송재봉
최민희 · 이병진 · 박용갑
김승원 · 황정아 · 박해철
이광희 · 최혁진 · 김동아
김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p> <p>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6. (생 략)</p> <p><u><신 설></u></p> <p><u>17. (생 략)</u></p> <p>③ ~ ⑥ (생 략)</p>	<p>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16. (현행과 같음)</p> <p><u>17.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u></p> <p><u>18. (현행 제17호와 같음)</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